

의안번호	2220792
의 퇴 인	안호영 의원
회 답 일	2026.9.4.
추 계 번호	26B4275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,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,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변화(과태료 수입 감소)는 2027년 80만원, 2031년 14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00만원(연평균 140만원)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1호)	-80	-80	-80	-80	-80	-400	-80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2호)	-60	-60	-60	-60	-60	-300	-60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3호)	—	—	—	—	—	—	—
합계	-140	-140	-140	-140	-140	-700	-140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3 (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)	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하며, 이하 “도급인”이라 한다)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(이하 “수급인”이라 한다)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“임금비용”이라 한다)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(前月)[임금비용을 최초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로 지급한 월(月)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]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		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제3항)	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
2	안 제26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.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.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7조의3(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의결(3.12.) 및 공포(4.7.)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26조(과태료)	○	• 공식추계 －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 조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,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,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될 경우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제1호~제3호의 삭제로 인한 따른 과태료 수입의 감소액이므로,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과태료 수입의 감소액은 최근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토대로 산출
 - 추계기간 동안 과태료 수입 감소액은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

[표 1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제1호~제3호에 따른
과태료 수입액: 2021~2025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평균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1호)	—	—	100	300	—	80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2호)	—	—	—	300	—	60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3호)	—	—	—	—	—	0

자료: 고용노동부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,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,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변화(과태료 수입 감소)는

2027년 14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00만원(연평균 140만원)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1호)	-80	-80	-80	-80	-80	-400	-80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2호)	-60	-60	-60	-60	-60	-300	-60
과태료(안 제26조제2항제3호)	—	—	—	—	—	—	—
합계	-140	-140	-140	-140	-140	-700	-140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3.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벌금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2021~2025년 과태료 수입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므로 실제 재정수입 변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